

시설 내에서의 어르신 학대에 대하여

1.신체적 학대

- *방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.
- *약을 안 드리거나 불필요한 약을 강제로 드림.
- *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여시킴.
- *밀어서 넘어뜨리거나 불필요하게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함.

2.정서적 학대

- *불친절하거나 무시하는 행동.
- *유아적 표현이나 반말, 욕설.
- *물건 등을 던져 위협하는 행동.
- *직원의 무기력하고 무표정한 태도.
- *방문객을 싫어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언행.

3.성적 학대

- *방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행위.
- *기저귀만 채우고 옷을 입히지 않는 행위.
- *존엄성을 배려하지 않는 목욕이나 이동 시의 노출.
- *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.
- *쓸데없이 몸을 만지는 행위.

4.방임

- *불결한 주거환경에서 돌보지 않는 행위.
- *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부재.
- *더러운 의복이나 침구.
- *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.

◆ 노인학대 신고 ——— ☎ 1577-1389

- 신고자의 비밀 보장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3항) -

신체 상해(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)
성폭행 및 희롱 치료방임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)
금품 회수 등 경제적 학대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“)
신분보호 위반(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)
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방해(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)

♣어르신들 사랑합니다. 더 노력하겠습니다!